

2.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

☐ 제안이유

- 무주택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지원 하고 있는 전세자금에 대해 파주시와 주택은행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파주시에서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코자 하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- 2000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으로 파주시에 배정된 4억 4,300 만원에 대한 채무를 파주시에서 보증하게 되는 것으로,
- 지원대상자는 전세융자금 신청자중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배정된 자금 범위내에서 결정하게 되며 융자 한도는 세대당 1,000만원으로 연리 3%로 2년내 상환토록 하고 전세기간 연장시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,
- 자금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을 설치·관리케 되며 한국주택은행 금촌지점에서 융자업무를 취급하고,
- 읍면동장이 채무자에 대한 이자납입 상환실태, 주거실태등 부실채권 방지등을 조사 관리토록 하고 있음.

☐ 검토의견

-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저리의 융자지원은 저소득 서민에게는 일반은행 대출이 어렵고 경직된 자금시장등을 감안할 때 저소득자에 대한 시혜사업으로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아지며,

-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한 적법 타당한 일로 사료됨.
- 금번 전세자금의 융자신청 내용을 보면 총 40세대에 신청금액이 3억 8,800만원으로 배정금액 4억 4,300만원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